

자산보관 •관리보고서

이 보고서는 집합투자기구를 보관•관리하는
신탁업자가 집합투자재산이 적정하게 운용되었는지
여부 등에 관하여 확인한 내용을 투자자에게 제공
하기 위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 248 조제 1 항에 따라 작성되었습니다.

신탁업자명 : 홍콩상하이은행 서울지점
문의가능 전화번호 : 02-2004-0065/6955-1004

1. 집합투자기구의 개요

- 가. 집합투자기구 명칭: 삼성 KODEX 국고채3년 증권
상장지수투자신탁[채권]
- 나. 집합투자기구 분류: 증권집합투자기구(채권형)
- 다. 보관 •관리기간: 2023.06.11 - 2024.06.10
- 라. 집합투자업자: 삼성자산운용주식회사
- 마. 투자매매업자, 투자중개업자: 신한금융투자, 한
국투자증권, 대신증권, 미래에셋증권, 유진투자증
권, 메리츠증권, NH투자증권, KB증권, 현대차증권,
유안타증권, SK증권, 삼성증권, DB금융투자, KB증권
(구케이비), 하이투자증권, 다올투자증권

2. 집합투자계약의 주요 변경사항

변경 일자	변경사유	주요 변경내용	
		변경전	변경후
2024. 03.14	투자대상자산 추가 제35조(투자한 도)	(신 설)	5.환매조건부의 매도는 투자신탁 이 보유하는 증 권총액의 100분 의 50 이하로 한 다.
	운용/판매보수 조정 제38조(투자신탁 보수)	1. 운용보수율: 연 1,000분 의 0.75 2. 지정참가회 사보수율: 연 1,000분 의 0.50	1. 운용보수율: 연 1,000분 의 1.24 2. 지정참가회사 보수율: 연 1,000분의 0.01

* 자세한 변경사항은 <http://dart.fss.or.kr>을 통해서
찾아 보실 수 있습니다.

3. 투자운용인력의 변경

변경 일자	변경 사유	성명	협회등록번호
2024. 03.21	말소	이태규	2120000848
	신규	김정현	2123001111

* 자세한 변경사항은 <https://dis.kofia.or.kr/> 을
통해서 찾아 보실 수 있습니다.

4. 집합투자자총회의 결의내용

- 해당사항 없음

**5. 이해관계인과의 거래의 적격여부를 확인한 경우의
그 내용**

- 해당사항 없음

6. 회계감사인의 선임 •해임에 관한 사항

변경전				변경 일	변경후			
회계 감사인명	계 약 기 간	감사 보수	계약 방법		회계 감사인 명	계 약 기 간	감사 보수	계약 방법
대주회계 법인	1년	187만 원	서면계 약	-	-	-	-	-

*모자형집합투자기구의 경우, 위에 명기된 회계감사
인보수 금액은 모집합투자기구 및 자집합투자기구에서
지급되는 보수 금액 모두를 포함하는 금액입니다.

7. 법 제247조 제5항 각호의 사항 확인

- 투자설명서가 법령 및 집합투자계약에 부합하는지
의 여부
- 부합함
- 자산운용보고서의 작성이 적정한지 여부
- 적정함
- 위험관리방법의 작성이 적정한지 여부
- 해당사항 없음
- 집합투자재산의 평가가 공정한지 여부
- 공정함
- 집합투자재산의 평가결과에 따라 기준가격이 적정
하게 산출되었는지 여부
- 적정함
- 집합투자업자의 운용지시가 법, 집합투자신탁
또는 투자설명서에 위반된 경우 신탁업자의 시정요구 및
이에 대한 집합투자업자의 이행명세
- 해당사항 없음
- 집합투자재산 명세서와 신탁업자가 보관 • 관리
중인 집합투자재산의 내역이 일치하는지 여부
- 일치함
- 집합투자재산별로 미리 정해진 자산배분명세에 따
라 매매결과를 공정하게 배분되었는지의 여부
- 본 항목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
령 제269조 제 1항 제1호에 의거하여 집합투자업자
가 운용하는 전체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을
보관 • 관리하는 신탁업자가 둘 이상인 경우에는
해당 신탁업자의 확인사항이 아님
- 집합투자증권의 추가발행 시 기존 투자자의 이익을
해칠 염려가 없는지 여부
- 해당사항 없음

8. 그 밖에 투자자 보호에 필요한 사항

- 이 투자신탁은 실적배당상품으로 은행예금과는 달리
예금보험공사의 보호를 받지 못함에 따라 투자원리금
전액이 보장 또는 보호되지 않습니다.
- 이 투자신탁의 운용 및 투자 등에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사항은 해당 집합투자업자 홈페이지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